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022년 6월 호>

(주제:ESG, 거버넌스(G)와 청렴윤리경영)

COVER STORY

거버넌스(G)는 기업 투자자들이 ESG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부패·청렴'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G'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범과 적용 사례들을 알아보고, 전문가 코칭 코너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기업의 ESG 대응 방안 및 반부패 실현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코칭

거버넌스(G)의 의미와 청렴윤리경영



이상명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전략경영학회장

Q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경영 중 거버넌스(G)의 의미와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왜 앞의 두 단어인 환경과 사회는 형용사이지만, 마지막 거버넌스는 명사일까 하는 점이다. 이는 ESG 논의의 첫 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환경과 사회라는 부분은 기업이 만들어 내는 '가치'의 한 요소(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이며, 동시에 포괄적 '관점'인 데 반해, 거버넌스는 기업이 추구해 왔던 경제적 가치의 한 속성이며, 동시에 평가의 한 요소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즉 G는 E와 S에 비하여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우선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이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버넌스(G)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구조 변화에 노력해야 한다.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등의 기준에 맞추어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시도가 첫출발이라고 할 것이다. 즉, 거수기가 아닌 실제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별, 배경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group think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보상에 있어서도 장기성과와 연계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단기성과와 연동되던 기존의 보상체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 또는 지속가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작년 기준, 70%가 넘는 대기업들이 이를 설치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슈를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려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어떠한 제도가 '설치되었다'는 것과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질적 운용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그 역할이 '보고 및 검토'에 국한되어 상징적 역할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적 역할의 수행과 활동들을 내·외부 이해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업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근간인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Q2. 글로벌 ESG 평가의 거버넌스(G)에는 반부패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의 조사결과에도 투자자들이 반부패 영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의 거버넌스(G) 강화 방안 중 반부패 관련 국내 기업의 최우선 과제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또는 당신 기업은 부패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절대 아니다’라는 답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핵심 주제로 반부패가 다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800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ESG 관련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 반부패가 1위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 결과를 보면, 국가 전체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경영부문 관련 부패를 나타내는 지수는 OECD 평균 점수보다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부패 대응을 위해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기업문화 체질 개선과 함께 하드한 측면에서 제도의 준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부패와 연관된 대부분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기업 및 그가 속한 사회 속에 ‘관행’으로 녹아내린 행동들이라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의 경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이라는 관행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표준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업문화 개선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기업과 사람이 이러한 문화개선 활동만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도 차원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반부패 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기업 나름의 원칙/기준/리더십이 강력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성과평가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평가시스템이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간의 행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부패)도 강구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이 필수적이다. 회계나 전산에 국한되었던 시스템을 전체 업무 프로세스와 연결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부패는 결국 인간의 욕망의 문제이기에 이를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가령, 단기순환보직, 강제휴가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이상 현상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발생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부패의 발생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필수적이다. 재발방지 시스템과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등은 반부패 활동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ESG라는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이란 기업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이든, 또 어떤 사업장이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패는 결국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화두를 실천하는 기업에서는 핵심적인 관리 요소가 되는 것이다.

사례돌보기

미 해외부패방지법 사례를 통해 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의 의미

1. 미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법) 사례

■ 해외기업의 위반사례

A사는 해외 정부의 한 국영 투자기업 설립 과정에 참여하여 채권 발행 및 판매에 관여하였는데, 해당 투자기업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과 함께 A사 또한 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A사는 2012년부터 5년간 제3자를 통해 해외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금이 유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이다.

이로 인해 A사는 33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으며, 회사 차원에서는 1억7400만 달러(약 2,000억 원) 규모의 전·현직 고위 경영진 급여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내기업의 위반사례

B사는 국내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여금 조작과 상품권 허위 구매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료 및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해외에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2건의 프로젝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다.

이로 인해 B사는 630만 달러(약 75억 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2022년 2월부터 2년간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개선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부패 이슈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처럼 기업의 부패행위는 기업에 재무적 손해뿐만 아니라 투자자·고객의 신뢰 상실 등 기업가치의 하락이라는 무형적인 손해까지 야기하는 치명적인 리스크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Korea-Compliance Program, 이하 K-CP)'를 간략히 소개하고, K-CP의 체계와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연재하여 다루기로 한다.

2. K-CP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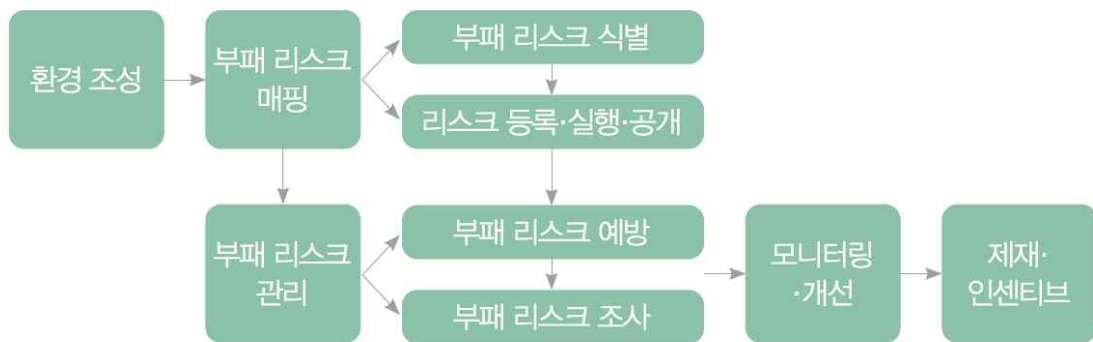
청렴윤리경영 CP는 기업이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모두 고려하는 경영 방식으로,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고 청렴경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K-CP는 공기업·기업이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반부패법령, 국제기구의 규정·지침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설계한 것으로,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CP는 국내·외 문헌분석 및 지표분석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기업용 평가지표 및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21.11.)하였다. 올해 2월에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초안을 개발 완료하였고, 시범운영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매뉴얼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K-CP 지표는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 부패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로는 고위 경영진의 실천의지, CP 전담조직 구성·운영, 부패 리스크 식별·평가·경감조치, 위험신호 감지 및 대응,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구성 체계(안)



3. K-CP의 필요성

2010년대 들어 ESG를 기업 경영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EU는 세계적인 자본시장 개편과 산업구조 변화의 대응전략으로 ESG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미 2018년부터 EU 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보고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시행하는 등 ESG에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 인권보호,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반부패, 뇌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가 실시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서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수는 글로벌 기업을 앞섰으나, 거버넌스(Governance) 지수는 뒤쳐져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소홀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반부패·청렴을 포괄하고 있는 'G'영역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반부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7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법)'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이며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등을 이용해 부패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패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도 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법 위반 시에는 수출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금지, 증권거래 정지 등 강한 제재를 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TOP 10>

순위	국가별	기업명	벌금·이익환수금 (USD)	년도
1	미국	Goldman Sachs Group Inc.	\$3.3 billion	2020
2	네덜란드/프랑스	Airbus SE	\$2.09 billion	2020
3	브라질	Petroleo Brasileiro S.A. - Petrobras	\$1.78 billion	2018
4	스웨덴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1.06 billion	2019
5	스웨덴	Telia Company AB	\$1.01 billion	2017
6	러시아	MTS	\$850 million	2019
7	독일	Siemens	\$800 million	2008
8	네덜란드	VimpelCom	\$795 million	2016
9	프랑스	Alstom	\$772 million	2014
10	프랑스	Societe Generale S.A	\$585 million	2018

*참고: The FCPA Blog,

<https://fcpcbog.com/2020/10/26/wall-street-bank-earns-top-spot-on-fcpa-blog-top-ten-list/>

미국 이외에도 영국은 2010년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을 제정하고, 자국 기업 및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도 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상한 없는 벌금을 적용하므로 영국의 뇌물방지법 또한 제재 수준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제재 사항 외에 다른 유의점은, 해외부패방지법과 같은 글로벌 반부패 규범들은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우를 면책 또는 감경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K-CP의 도입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K-CP는 부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ESG 경영의 취약 분야인 'G' 영역의 강화 수단이자,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리뷰

기업책임경영의 기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OECD(2018)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은 기업실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책임경영의 이행을 돕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보고서는 서언에서 기업책임경영 관련 기업실사에 대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의 구성과 실사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개요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실사(Due Diligence)란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¹⁾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실사지침은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사의 대상은 인권, 근로자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부패, 정보공개 및 소비자 이익 등 기업책임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기업 실사의 이유는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위험(Risk)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책임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사를 통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업 실사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 운영과 사업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기업 실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 기업 운영상 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부정적 이슈 발생률 감소, 책임경영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충족 등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업책임경영 실사 과정 개요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행동규범으로 현재 한국 등 35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8개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은 수락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단계별 실사 과정

- 1단계 : 기업책임경영을 경영시스템에 반영 및 내재화
- 2단계 : 공급망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 관계에서 리스크 평가
- 3단계 : 부정적 사항의 중단, 예방, 완화 조치 마련
- 4단계 : 조사사항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5단계 : 실사 전체 과정에 관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6단계 : 구제절차 진행(필요시)

1단계 '기업책임경영의 경영시스템 반영 및 내재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원칙과 표준을 기업책임경영 관련 정책 및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책임경영 관련 정책들을 감독기구에 내재화함으로써,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을 책임경영에 참여시키고, 실제로 책임경영을 하게끔 만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 '공급망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 관계에서 리스크 평가'는 기업이 당면했거나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known risks)을 포함하여 범위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부터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3단계 '부정적 사항의 중단, 예방, 완화 조치 마련'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4단계 '조사사항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실사 활동(부정적 영향 파악, 예방, 완화, 구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 및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효과에 대한 내부검토 또는 제3자 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에서 소통하도록 한다.

5단계 '실사 전체 과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은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의사소통하는 단계이다. 기업실사 결과를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기업책임보고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한다.

마지막 6단계 '구제절차 진행'에서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이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협력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정적 영향의 중요성이나 규모에 비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

당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 또한 조치 이후에는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책임경영 실사지침 활용을 위한 제언

실사지침은 국제적 규범으로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에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사지침을 준수하고, 기업책임경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버넌스 영역의 '뇌물 및 부패방지'에 대해 살펴보면, 뇌물 및 부패는 거버넌스에 피해를 주므로 기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실사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뇌물수수·청탁 등의 근절은 기업실사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침을 통해 뇌물수수·청탁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버넌스는 반부패 개념을 포괄하는 영역임을 숙지하고, 기업의 책임경영활동 이행에 있어 부패 관련 영향 평가 및 적극적인 대응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ESG 정보공시지침(NRFD와 CSRD)

국제기구와 각국은 ESG 경영 관련 법, 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공시는 ESG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므로 국제기구 등은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2014년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수, 자산총액, 순매출 규모에 따라 역내 기업에 대해 **비재무보고(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개정된 것이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EU는 이를 통해 공시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1. EU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과거 EU 기업이 아닌 경우 NFRD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과 유럽의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럽 그린딜이 2019년 12월에 합의됨에 따라 지속가능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기 후 변화 완화에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NFRD를 개편하였다.

1) 적용 범위(아래 사항 중 최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사)

- 근로자 수 : 500인 이상의 기업
- 자산총액 : 2,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순매출 :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2) 공시 정보

- 환경 : 환경오염 방지와 관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 사회책임과 직원관리 : 국제 노동기구 협약 이행, 직장 내 공평한 대우 등
- 인권존중 : 인권 실사, 인권 침해 관리 등
- 반부패 및 뇌물 : 반부패뇌물 관리 정책,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 이사회내 다양성·전문성 : 성별, 경력 등

3)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impact materiality)뿐만 아니라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내부적 관점(inside-out)과 외부적 관점(outside-in)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조직의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 재무성(pre-financial)'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4) 보고서 구조

표준화된 비재무(지속가능성) 정보는 경영보고서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명세서(sustainability statements)는 별도 혹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섹션에서 다뤄야 한다. 지속가능성 명세서는 전략, 실행 및 성과 측정의 3가지 영역을 포함해야 하는데, 전략에는 ESG 주제 전반에 걸친 중요성, 거버넌스, 관리 책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고, 실행 및 성과 측정에는 주제별 목표와 성과 지표를 다룬다.

2.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SRD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경영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기업에 요구한다.

CSRD는 NFRD가 기업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시를 이끌어내지 못 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1) 적용 범위

- EU 국가에 상장된 회사
- 아래 사항 중 최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사



2)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

공시 정보가 건실하고 정량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현재 유럽 위원회의 자문 기관인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 중이다. CSRD는 회사의 전체 가치 사슬과 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예: 기후 변화 완화, 인적 자원, 기업 윤리, 정치적 참여) 분야에 관련된 다음의 9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될 전망이다.

1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2	목표 설정과 시행 절차
3	경영진·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4	지속가능성 관련 방침
5	실사 절차, 가치사슬 내 부정적 영향 식별, 완화·예방·제거방안 및 조치 결과
6	위험 및 관리 방법
7	위 공시항목 측정지표
8	인적자원,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 정보
9	지속가능성 정보 평가 과정 및 중·장·단기 고려 여부

4) 중요성 판단

CSRD 제안서 또한 '이중 중요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은 다음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환경, 사회 및 직원,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안건에 대하여 기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Inside-out perspective)
- 지속가능성 과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개발, 성과 및 시장 포지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Outside-in perspective)

5) 제3자 인증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전문성 및 독립성이 동일하게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법정 감사인 또는 공인된 독립 인증기관이 인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제3자 인증을 통해 공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CSRD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황 평가 (Current State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RD의 범위에 EU 기반 자회사가 존재하는가? ▪ 새로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적용 된다면 현재 프로세스와 통제에 변화가 필요한가? ▪ TCFD 및 GRI 표준에 따른 데이터 요건은 무엇이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적용에 활용 가능한가?
전략 개발 (Strategy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현재 ESG 전략은 CSRD의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가? ▪ 기업의 조직 구성에서 보고 요건이 적용되는 단계는 어디인가?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고 준수 요건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하는가?
프로세스, 통제 및 거버넌스 (Process, Controls and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정보와 미래 전망 보고를 위하여 어떤 프로세스와 통제가 필요한가? ▪ 현재 프로세스가 CSRD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수준까지 지속가능 보고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

<참고>

- <https://www.pwc.com/kr/ko/services/esg-platform/csrd.html>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9>
- <https://rd.kdb.co.kr/index.jsp>
-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309005.pdf>
- 김수연, EU의 ESG 규제 주요 내용: Taxonomy, NFRD, CSRD를 중심으로, BFL 제109호(2021.9)

문화 속 기업윤리

강제된 침묵을 깨다 영화 '스노든'



영화 <스노든>은 2013년 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민간사찰을 폭로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이 공개하지 않은 메일, 문자, sns 등을 마치 포털사이트처럼 간단하게 키워드로 검색하는 등, 미국 정부는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합법적인 절차 없이 민간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조회하고 수집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선 용기 있는 고발이다’라는 입장과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한 민간사찰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폭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는 입장. 미국사회 안에서도 스노든의 폭로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스노든은 말한다. “국민은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포기해선 안 된다.”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이 ‘알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이 건강하고 윤리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2012년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요인은, 조직 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었다. 다양한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기업 활동에 있어, 부당함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자유로운 기업문화, 그리고 신고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기업은 인식해야 한다.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뉴스 클립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윤경 ESG 포럼에서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과 K-CP 이행 강조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윤경 ESG 포럼 CEO 서약식에서 ESG 경영과 기업 청렴윤리경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패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글로벌 투자기관과 소비자들은 기업의 부패·뇌물방지를 위한 기업윤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기

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 결과(S&P사 실시)에 따르면 반부패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G(거버넌스)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국민권익위, K-CP 시범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6개 시범운영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을 대상으로 K-CP 도입·운영 관련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면밀하고 활용도 높은 제도 설계를 위해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CP 운영계획 수립, 부패 리스크 식별·관리 등 CP 제도 전반에 대한 현 상황

을 진단하고 취약분야와 참고사례들을 제시하는 한편,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CP 매뉴얼을 보완·배포하고,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민권익위는 공기업·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동향

ISSB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초안 발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TCFD의 권고를 기초로 하며, IFRS와 통합한 SASB의 산업 기반의 정보공개 요구사항도 포함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표준 초안을 마련했다. 표준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IFRS S1의 일반 요구사항', 'IFRS S2의 기후관련 공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ISSB의 발표 이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실적, 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참고: 법률신문, 2022. 4. 28.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78322>

EU,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ESG 공시 기준 공표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ESG 정보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의 초안을 공표했다. EFRAG는 공시기준이 확정되면 적용 대상 기업은 2024년부터 2023년도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CSRD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이 기준은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공시와 함께 "광범위한" 공시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기준은 EU가 제정하는 공시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참고: ESG경제, 2022. 5. 4.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

행사 소식

ESG, 거버넌스/규정을 위한 국제표준의 이해

ESG의 거버넌스와 규정을 위한 국제표준 ISO 37301과 ISO 37001 요구사항의 이해를 돕는 Web Seminar

주최 : BSI Group Korea(영국표준협회)
일시 : 2022년 06월 13일 / 15:00~17:30
방법 : Online(zoom)
참고 : <http://bsiblog.co.kr/archives/31729>

Responsible Business Asia 2022 Sustainability: The Business Imperative for a Brighter Future

ESG 목표에 대한 내부 환경 탐색,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탄력적 공급망 제공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사례 공유 포럼

주최 : Reuters
일시 : 2022년 6월 22일 ~ 23일
방법 : Online
참고 : <https://events.reutersevents.com/sustainable-business/responsible-business-asia>

바로보는 기업윤리

책임전가



지금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올바른 업무환경, 나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수입니다.

독자 퀴즈

Q.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명칭은?

- ① FCPA
- ② K-CP
- ③ NFRD
- ④ UK Bribery Act

- ◆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6월 22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 ④

지난호 정답자는 이영훈님, 김현민님, 안준규님, 신예인님, 임수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